

제288회 임시회
2010. 3. 23(화)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0. 3. 23.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

2. 회부일자 : 2010년 3월 3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2010. 3. 1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길중)

1. 제안이유

- 소방 3교대 인력 확충과 특별 행정기관 업무이관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원 증원과 일부 기능쇠퇴분야 정원감축 등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 기능적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792명 → 2,937명 (증14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7명 → 1,447명 (증10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243명 → 1,378명 (증135명)
- ※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 기능직 공무원

구분	총정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253명	1%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상
조정	247명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이상
증감	△6명	변동없음	+1%	+6%	+3%	△2%	△8%

※ 일반직, 연구·지도직, 소방직, 별정직 변동사항 없음.

③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 총 계 2,792명 → 2,937명(증145명)

- 일반직 1,070명 → 1,086명(증16명)
 - 5급이하 998명 → 1,014명(증16명)
- 소방직 1,243명 → 1,378명(증135명)
 - 소방령이하 1,233명 → 1,368명(증135명)
- 기능직 253명 → 247명(감6명)

※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

가.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직 공무원 3교대 인력과 국·도정시책 추진 등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내용은

- 정원총수를 2,792명에서 2,937명으로 총 14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 소방직 공무원 3교대 인력 135명을 증원한 1,378명으로 조정,
- 국·도정 시책추진을 위한 16명을 증원하고 기능쇠퇴분야인 기능직 공무원 6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447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총정원 변동내역》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교 육 공무원	기능직
개정후	2,937	1	1,086	21	138	24	1,378	42	247
개정전	2,792	1	1,070	21	138	24	1,243	42	253
증감	145	-	16	-	-	-	135	-	△6

□ 소방직 공무원 3교대 인력은

- 2005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연차별 추진
 - 2교대 근무제인 소방직 공무원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기진작
 - 주 84시간 2교대 근무를 주 54시간 3교대로 근무여건을 개선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방직 공무원 3교대 인력 충원운영
 - '09년 113명(정원 1,130명 → 1,243명)
 - '10년 135명(정원 1,243명 → 1,378명)
 - '11년 135명(정원 1,378명 → 1,513명)
- 3교대 소요인력 판단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270여명을 산출
 - 소방수요 및 최소 소방활동 능력 등을 고려 소방인력 산출⁵⁾
 - 도 지역사정을 감안 안전센터당 31명, 구조대당 13명, 지역대당 9명 등 기준 설정
- 인력확보에 따른 3교대 근무제로
 -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
 - 주당 근무시간 감소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조직운영 활성화 기여
 - 과중한 업무에서 발생하던 순직·공상 등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5)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소방인력 기준은 1교대 인원 119안전센터 31명, 119구조대 7명임.

□ 국·도정시책추진을 위한 증원 10명은

- 정부가 제시한 2010년 총액인건비 1,836억원, 증원책정 총 170명
 - 2009년 총액인건비 1,772억원보다 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공무원 정원 증원책정 일반직 공무원 35명, 소방직 공무원 135명 중
-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과 기능직 증원 및 조정은
 - 경제정책과 2명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추진)
 - 축산위생연구소 7명(축산물공판장이전에 따른 축산물 안전검사)
 - 도로관리사업소 5명, 식품의약품안전과 1명(특별행정기관 이양)
 - 국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3명(하천과 2명, 토지정보과 1명)
 - 4대강 살리기 업무, 새주소 사업 업무
 -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2명(회계과 1명, 내수면연구소 1명)
 - 재무회계 및 공유재산 업무, 내수면 행정수요 증가
- 총 20명을 조정하며, 이중 일반직 공무원 16명, 기능직 공무원 4명(내수면연구소 1명, 도로관리사업소 3명)임.

□ 기능직 공무원 직급분포비율 상향조정은

- 2008년 정부 정원감축 권고안 △25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 일반직 공무원 35명 증원하지 않고 필요인원 16명 증원하고,
 - 기능쇠퇴분야인 기능직 공무원 정원 △6명을 감축하며
 -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분포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감축에 따른 사기를 양양하려는 것임.

《기능직공무원 정원 및 직급분포비율내역》

구분	총정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기준	247명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상
개정후 예상인원	247명	1명	18명	54명	54명	75명	45명
개정전	253명	1명	14명	40명	48명	80명	70명
증감	△6명		4	14	6	△5	△25

* 비율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예상인원으로, 개정후 예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종합의견

금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제시한 2010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국·도정 시책추진과 업무이관에 따른 이관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양양을 위하여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의 증가는 집행기관의 정원 10명, 소방직공무원 3교대 인력 135명 증가한 2,937명이며, 집행기관의 증감인력은 일반직공무원 16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공무원 6명이 감소한 것임.

정원총수 145명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2010년도 인건비 예산액 1,730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한 1,781억원 정도이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된 총액인건비 1,836억원의 범위내에서 있음.

이는 충청북도의 당면현안 과제인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따른 축산물안전검사에 대한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 지방으로 이관되는 국토관리청·식약청에 대한 이관인력 수용, 증가하는 도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직급 비율 상향을 통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를 양양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처로 판단됨.

다만, 2009년도 정원조정시⁶⁾마다 감축을 하였고, 이번에도 기능직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과원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2010년도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운영에 대한 설명과 기능직공무원 사기 양양을 위한 직급비율 조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직렬 조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6) 09. 9. 1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반직 +14명, 기능직 △3명)
09. 12.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반직 +5명, 기능직 △7명)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1
------------	-----

제출연월일 : 2010년 3월 2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소방 3교대 인력 확충과 특별행정기관 업무이관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원 증원과 일부 기능쇠퇴분야 정원감축 등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 기능적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792명 → 2,937명 (증145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37 → 1,447명 (증10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243→1,378명(증135명)
※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별표2)

- 기능직 공무원

구 분	총정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253명	1%이내	6%이내	16%이내	19%이내	32%이내	26%이상
조정	247명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이상
증감	△6명	변동없음	+1%	+6%	+3%	△2%	△8%

※ 일반직, 연구·지도직, 소방직, 별정직 변동사항 없음.

③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별표3)

- 총 계 2,792명 → 2,937명 (증145명)
 - 일반직 1,070명 → 1,086명 (증 16명)
 - 5급이하 998명 → 1,014명 (증 16명)
 - 소방직 1,243명 → 1,378명 (증135명)
 - 소방령 이하 1,233명 → 1,368명 (증135명)
 - 기능직 253명 → 247명 (감 6명)

※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총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92명”을 “2,93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37명”을 “1,44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243명”을 “1,378”명으로 한다.

별표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이상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2,937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086		-		
2~3급	1		1		
3급	9	8		1	
3~4급	1	1			
4급	61	44	7	4	6
5급이하소계	1,014		-		
별정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		
연구직 계	138		-		
연구관	22			19	3
연구사	116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6			6	
지도사	18		-		
소방직 계	1,378		-		
소방정	10	2		8	
소방령이하	1,368		-		
교육공무원계	42		-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1		-		
기능직 계	247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92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7명</u>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 <u>1,243명</u> 3. ~ 4. (생략)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937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47명</u>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 <u>1,378명</u> 3.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